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2288
----------	-------

제출연월일 : 2025. 8. 2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신제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며,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및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취소 사유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그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을 “홍보할”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기술이”를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가 신기술의 성능·효과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제16조의 제목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을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품질·성능이 우수하고 재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는 효과가 큰 재난안전제품을 재난안전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 또는 인

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또는 지정”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그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를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한다.

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재난안전신제품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의”를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의”로, “인증제품”을 “재난안전신제품”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인증의 취소)”를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을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 또는”을 “거짓이나”로, “인증”을 “재난

안전신제품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제품”을 “재난안전신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한다.

6.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가 재난안전신제품의 품질·성능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제19조제1항 중 “인증제품”을 “재난안전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각각 “재난안전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제품”을 “재난안전신제품”으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인증 또는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또는 지정”으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한다.

제26조제6호 중 “인증 및”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및”으로, “인증제품”을 “재난안전신제품”으로 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2026년 1월 1일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의 취소: 2026년 1월 1일

제28조제2호 중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제품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u>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③ ----- ----- ----- ----- <u>그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u>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u>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u>	④ ----- <u>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u> ----- ----- ----- ----- ----- ----- ----- -----.
⑤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u>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u> 이 경우 신기	⑤ ----- ----- ----- <u>홍보할</u> ----- ----- -----.

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기술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⑦ (생략)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① -----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 -----

-----.

1. ~ 5. (현행과 같음)

6.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가 신기술의 성능·효과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품질·성능이 우수하고 재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는 효과가 큰 재난안전제품을 재난안전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의 유효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
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
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
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
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
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
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
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
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

기간은 지정받은 -----

-----.

③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또는
지정-----

----- 그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
여야 -----.

④ -----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

-----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

-----.

⑤ 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신제
품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
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

----- 재난안전신제품 지
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재난안
전신제품 지정-----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대상·절차·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생략)

4. 업종변경·폐업 등으로 인하

-----.

⑥ -----
-----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

제17조(재난안전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의 --- 재난안전신제품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취소 등) ① -----
-----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을 ---. --- 지정-----.

1. 거짓이나 -----
-----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2. 지정 -----

3. (현행과 같음)

4. -----

여 인증제품의 생산·제작 등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① 행
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
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
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
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
임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 재난안전신제품-----

5. (현행과 같음)

6.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가 재난안전신제품의 품질
· 성능 등에 관하여 거짓·과
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② ----- 재난안전신제
품 지정-----

--.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① ---

----- 재난안전신
제품-----

--.

② ----- 재난안전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경우에는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구매나 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생략)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제25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 재난안전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③ ----- 재난안전신제품-----.

제23조(수수료) -----

-----.

1. (현행과 같음)

2. -----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또는 지정-----

제25조(청문)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18조제1항에 따른 <u>인증</u>의 취소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재난안전신제품 지정</u>----- --
제26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제16조에 따른 <u>인증</u> 및 제17조에 따른 <u>인증제품</u>의 사후관리 7. ~ 9. (생략) <u><신설></u>	제26조(업무의 위탁)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재난안전신제품 지정</u> 및 ----- ----- <u>재난안전신제품</u>----- -- 7. ~ 9. (현행과 같음) <u>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u>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u>인</u> <u>증</u>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u>기술 지정의 취소: 2026년 1월 1일</u>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u>재</u> <u>난안전신제품 지정의 취소:</u> <u>2026년 1월 1일</u> 제28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2. ----- <u>재</u> <u>난안전신제품 지정</u>-----
--	--